

2021학년도 1학기

수강편람



활 용 안 내

- ◆ 이 편람은 학사지원실-112호(2021.01.08.) 제작된 공문서로서, 전주대학교 학칙 및 학칙시행세칙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, 업무지침의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.
- ◆ 이 자료에서 굵은 글씨로 표기된 부분은 수강 신청 시 특히 유의하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8. 창업학점제

가. 목적 : 기술과 아이디어를 가진 학생이 재학 중 창업을 하고자 할 경우, 학업을 계속하면서 창업 실전에 필요한 지식을 습득하고, 실제 성공 창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운영

나. 교육과정 편성

- 1) 창업학점제 신청은 해당 학생이 창업학점제 이수 신청서와 지도교수가 승인한 사업계획서를 학사지원실에 제출하고 총장의 결재를 얻은 후 교육과정으로 인정
- 2) 창업학점제는 실제로 창업을 하고 이에 따라 학점을 인정받는 제도로 창업단계와 창업 후 단계로 구분되어 운영됨
- 3) 창업학점은 지도교수가 평가하여 한 학기에 16학점 범위 내에서 신청할 수 있고, 창업단계에 있는 예비창업자는 지도교수의 지도아래 창업활동을 수행하여 그 결과를 보고서로 제출하고, 최종 사업자등록을 완료할 경우에 한해 학점을 부여함
- 4) 기 창업자는 창업 이후의 활동을 계획하여 지도교수에게 제출하고 이와 관련된 활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게 되면 학점을 인정받게 됨
- 5) 창업학점제 이수자는 다음 학기 성적장학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함

다. 강좌개설

- 1) 창업학점제 강좌는 지도교수의 지도에 따라 창업아이템을 선정하고 창업 준비활동을 수행하여야 하며, 신청 학생이 창업아이템과 관련 분야의 교수를 지도교수로 선택하여 신청하거나 대학에서 지도교수를 추천할 수 있음
- 2) 창업학점제 개설은 창업학점제 이수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, 창업학점제 주차별 수행계획서 및 주차별 지도계획서를 학장을 경유 교무처장에게 제출하고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
- 3) 기타 창업학점 개설에 필요한 사항

라. 창업학기 이수 신청 및 대상자 선발

- 1) 신청자격: 재학 중인 자로서 36학점 이상 이수한 자
- 2) 신청서 제출: 창업학점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매 학기 개시 전 창업학점제 이수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창업지원단에 제출하여야 함

마. 제출서류

- 1) 창업학점제 이수 신청서
- 2) 사업계획서 및 이수학점 수
- 3) 사업추진계획에 따른 주차별 수행계획서(학생용) 및 진도표
- 4) 창업학점 강좌를 담당할 지도교수 추천서
- 5) 기타 과정별로 대학에서 요구한 서류

※ 창업학점을 이수하고자 하는 학생은 사전에 지도교수를 선정하고, 지도교수의 지도아래 창업학점제 이수 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함

※ 창업학점제 이수 신청서를 제출하고 교과를 이수하지 못할 경우가 있으므로 이를 이수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지도교수의 수강지도 후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

바. 대상자 선발: 창업학점제 선발기준에 의거 선발

사. 수강신청

- 1) 창업학점 이수 대상자로 선발된 학생은 학사지원실의 통보 후 홈페이지를 이용 수강신청을 하여야 함
- 2) 학기 중 창업학점을 신청한 경우 등록금을 납부함으로써 수강신청이 확정되며, 기간 내 미납 시에는 수강 취소함

아. 창업학점 이수

- 1) 창업학점은 재학 중 16학점까지 선택과목(교양 또는 전공)의 졸업학점으로 이수할 수 있음
- 2) 창업학점 신청학생이 제출한 결과보고서와 사업자등록증에 의거 창업활동의 성과물(매출액, 고용인원, 지식재산권 등)을 지도교수가 평가하여 학점을 부여하며, 패스 “P”, 미패스 “NP” 로 표기함
- 3) 창업학점은 성적표에 창업이라 표시하고 해당 학점과 판정을 기록
- 4) 창업학점제를 이수하기 위해서는 k-Startup 창업에듀(<http://k-startup.go.kr/edu>)에 개설된 패키지 과정 중 전주대학교 창업학점제로 개설된 온라인 강좌를 선택 및 수강하여, 결과보고서 제출 시 수료증을 첨부하여야 함
- 5) 지도교수는 학생이 창업학점제 중간보고서 제출 이후 사업 추진실적을 파악하기 위해 사업장을 방문하고 현장방문 지도보고서 제출
- 6) 사업계획서의 진도표에 의거 진척도가 부족하여 “NP” 를 받는 경우 재이수를 하여야 함

자. 창업학점제 신청학생의 준수사항

1) 의무사항

- (1) 창업학점제 이수자는 사업계획서에 의거하여 중간보고서를 중간고사기간(8주차)에, 결과보고서를 기말고사기간(15주차)에 지도교수에게 제출하여야 함
- (2) 창업학점제 이수자는 창업학기 이수기간중 지도교수의 지도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함
- (3) 창업학점제 신청학생이 의무사항을 위반한 경우 학점인정을 하지 않을 수 있음
- (4) 창업학점제 이수 기간 중 학생의 신분을 벗어난 행위로 학교의 명예를 실추시킨 자에 대하여 징계조치를 할 수 있음